



고용노동부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

수신 관내 사업장(기관) 귀하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귀 사업장(기관)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3.12.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**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, 1.5단계로 유지**하면서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3.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, 사업장(기관) 및 관계사 등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비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세부사항은 우리지청 홈페이지 '알림'에 게시하였습니다.

- 아 래 -

○ 적용기간: 2021. 3. 15.(월) 0시 ~ 2021. 3. 28.(일) 24시

○ 대상지역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·도)

1)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유흥시설 5종(**콜라텍 방역지침 추가**) 및 홀덤펍,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2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결혼식장, 장례식장, **돌잔치 전문점(방역지침 신설)**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학원(교습소)·직업훈련기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, 백화점·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 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 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- * '학원'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.2.15. 안내한 '미인

가 대안

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 따라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2: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3)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
 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3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4) 모임·행사
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(관리자·운영자 제재조치 추가), 그 외 모임·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(예외사항 추가)
 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
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붙임4: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5) 종교시설

- 대상시설: 종교시설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 - * '종교시설'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5: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6) 고위험사업장

- 대상시설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6: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7) 교통시설

-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7: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

8) 국공립시설 등

-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
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% 이내 제한 원칙, 이외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제한 원칙
 - * 경륜, 경정, 경마,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·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

9) 사회복지이용시설

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
 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
10) 스포츠 관람

- 30% 이내로 관중 입장

11) 직장근무

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(인력)은 제외
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자제
-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

끝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



근로감독관

황윤훈

전산사무관

전결 2021.3.18.

김용태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1759 (2021.03.18) 접수

우 5407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44 (조촌동 852-1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) / <http://gunsan.moel.go.kr>

전화번호 063-450-0534 팩스번호 063-450-0593 / hwang0113@korea.kr / 비공개(7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